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02일

월명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 조치 일자
김 *상	김 *상 1949-11-17	전라북도 군산시 창성2길 (창성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0-28